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・제정(법률 14476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・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 규정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・제정됨에 따라,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제정

- 관허사업등의 제한(안 제3조)
- 고액・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(안 제4조)
- 군세의 수납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세기본법』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〔기획감사실-2653(‘17.3.20)〕

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17622(‘17.3.21)〕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〔기간: ‘17.3.23～ ’17.4.12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기존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이 분리·제정됨에 따라 「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제정 내용으로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, 안 제2조는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에서는 체납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의 제한 기준을 두었으며
- 안 제4조는 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
- 안 제5조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 기준을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로 하였으며
- 안 제6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정하였고,
- 안 제7조는 조례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새롭게 제정된「지방세징수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,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